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6. 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 1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10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개요 ····· 31

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2.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3.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유형

Ⅰ.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최초로 실시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편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996년 국제연합에서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 제도'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이후 이 제도는 브라질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감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임.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2018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편함.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됨. 또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확대되어 기존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2024년 재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흐름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주민e참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업제안·투표·집행 현황 모니터링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주민참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에서 필요함

○ 첫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선호와 실제 선호와의 괴리에서 오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필요함

○ 둘째, 위법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복지 증대로 주민의 행정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급부행정의 단순한 수령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참여의 일환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함

○ 넷째, 주민참여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함

○ 핵심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 활동에 주민이 직접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음

○ 예산과정은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만 영향을 받다가 주민이라는 새로운 참가자의 등장으로 다자간 의사결정과정으로 변모함

전통적 주민참여형태와 주민참여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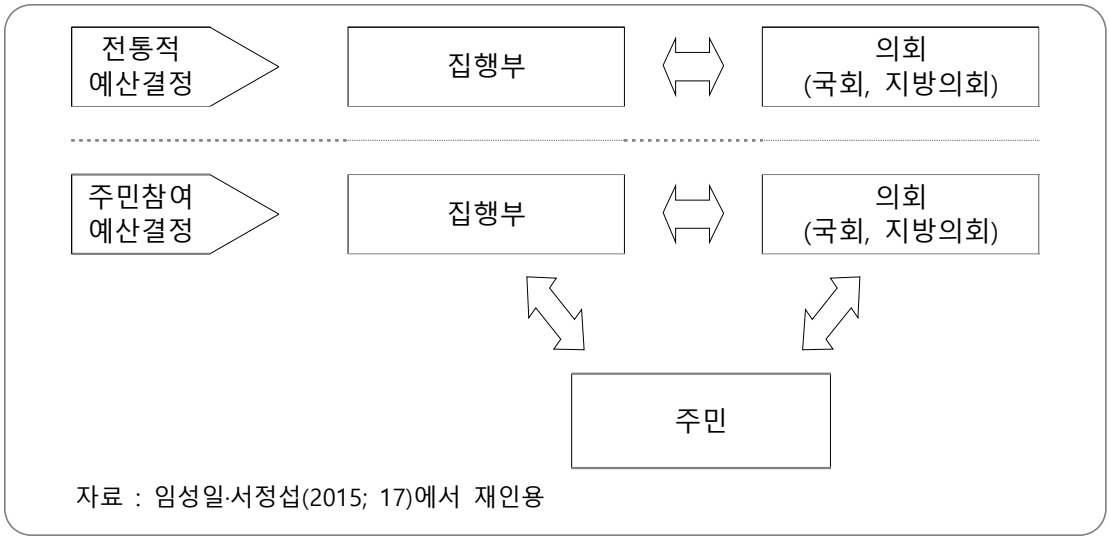

자료 : 임성일·서정섭(2015; 17)에서 재인용

□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역할을 담당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부패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브라질, 남미)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서유럽), 민주주의 경험 향상(동유럽, 중앙 유럽)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안성민·최윤주, 2009)

□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부패축소, 공공서비스 공급개선, 예산 우선순위의 전환, 자원배분 과정에서의 사회정의와 재분배 강화, 그리고 효율성 증진과 합리적 행정 도모 등의 순기능을 가져옴

2.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3년 7월 행정안전부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변화를 보임

연도	주요 내용	비 고
2005. 8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 신설(선택·권고 조항)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
2006. 8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조례(안) 통보	
2011. 3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의무사항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
2015.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
2018. 3	예산 全과정으로 참여 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규정 신설 등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
2020.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
2020. 3	참여 방법, 운영 평가 주기·항목 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개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유형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도의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는 대개 조례 제정의 목적, 주민의 범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모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모델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제1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제 규정 없이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됨

○ (제2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규정은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제3유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과 분과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모델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유형과 1~9조 동일	제2유형과 1~13조 동일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수립/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강제조항)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협의회 운영 임의조항)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공개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위원회 지원	제10조(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운영 임의조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 부칙	제15조(시행규칙) / 부칙	제24조(시행규칙) / 부칙

3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예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과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마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해당 연도 한도액,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예산과정에 참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서면 등을 통한 의견제출
4. 공모사업에의 응모 등

③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위원은 자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제12조(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그 밖의 국고보조사업,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대상 안건을 위원에게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지원협의회

제19조(지역회의)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본다.

② 지역회의는 각 구·군별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2. 주민참여예산기구
3. 주민참여 방법 및 범위
4.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분
5. 주민참여 활동 지원

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인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와 함께 후술하는 주민의 예산참여기구의 설치 등에 따른 활동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함

나. 주민의 기준

□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은 누구나 각 자치단체가 제정·운영하는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에 의하면, 주민이란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자체 예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당해 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 및 생산시설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도 등)

○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회원(○○광역시 등)

- 당해 자치단체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광역시, ○○도, ○○시 등)

○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구 등)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구 등)

>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출자기관이나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광역시, ○○도 등)

○ (예시) ○○시설공단은 2018년 2억 5천만원을 들여 관내 △△워터파크 주변 화단 데크를 설치하고 2019년 2억 7천 2백만원을 들여 ○○실내빙상장 관중석 구조를 개조함. 2020년에는 2억원을 들여 빙상장 건물 입구의 철골 구조물을 교체함. 공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됨. ○○시설공단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당개입해 예산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당한 사례로 ○○시설공단 전 이사장 김모씨는 주민참여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직원과 직원 가족, 직원 지인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따옴('22.6.23. 방송)

주민의 정의(예시)

❶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주민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❷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기구

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1)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하위 읍면동 단위의 지역회의로 구성되는데,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특별위원회(청년 등), 운영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 다양한 참여, 지원조직으로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공모사업 또는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확정, 해당 지자체의 예산안 전체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기능(예시)

❶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 사업에 대한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❷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의 심의・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지역회의는 주민제안사업 중 읍・면·동 단위 지역사업의 제안 및 우선순위 1차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비상설로 운영하기도 함. 그리고 기 설치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읍면동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장이 위원 위촉)나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위촉)가 그 역할을 대행하기도 함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방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예산위원의 위촉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는 공모·추첨 방식, 공모·선정방식, 추천방식, 당연직 등을 활용

○ (공모·추첨)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 예산학교 사전수료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나 성별·연령별·지역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쿼터제 등의 장치를 두는 경우도 공모·추첨에 해당

○ (공모·심사) 공모 후 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추천) 단체장, 의회, 시민단체, 지역회의 등의 추천에 의해 선정

○ (당연직) 공무원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자가 자동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회 구성방식(예시)

❶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또는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의 대표
3.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정 분야별 전문가

❷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원칙적으로는 공모 및 추첨 방식을 활용하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을 위하여 성별·인구별 비례 선발, 사회적 약자 우선 선발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장치(예시)

❶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❷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위원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필요는 없으나 위원 위촉 전후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 수료 등 일반 주민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자격요건 요청(예시)

❶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예산교육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❷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21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및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기구 회의 소집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위원회 소집 방식(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과정에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민참여 방법 및 범위

가. 주민참여방법

□ 지자체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관련 주민의견 수렴(예시)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주민참여의 방법은 사업공모, 참여예산 투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은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① 주민제안사업		②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주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업 -주민 제안 후 주민 직접 투표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서 심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회의 등에서 스스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자치단체가 일반 예산사업에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는 경우 - 주민투표, 공청회, 설문조사 등

□ 특히,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및 실적에 대해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도록「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첨부되는 주민의견서 항목은 공모 금액, 주민제안 방법, 우선순위 선정방법, 주민제안 건수, 주민제안 선정·반영 건수, 주민의견 수렴방법, 주민의견수렴 사업 내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자치단체 검토결과 등임

주민의견서 (예시)

❶ 지방의회 제출 주민의견서

OO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OO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절차인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한 **371건 13,679백만원**의 사업을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민제안건수**

지난 3~4월 시민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받아 5~7월 시와 구·군의 주민참예산위원회
↳ **주민제안방법** ↳ **우선순위 선정방법**
심사를 거쳐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8월 온라인 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선정 투표 및 우수사업 선정투표, 구·군 선정사업 승인을 실시하여 시정, 청년 및 구·군참여형 사업 **109건 10,373백만원**의 사업을 예산(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42개 전 읍면동에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모·발굴을 통해 제안된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262건 3,306백만원**의 사업이 최종 선정
↳ **주민의견 수렴방법**
되었으며, OO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20개 동아리가 참가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에서 입상한 10개의 사업 중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
↳ **주민의견 수렴방법** ↳ **자치단체 검토결과**
3개 사업 30백만원도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난 7~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2025년 OO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95개 세부사업 809,032백만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주민제안 선정 · 반영 건수** ↳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별첨)**

이 주민의견서가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 OO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꽃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 10. 00.

OO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 △

❷ 주민의견서

□ 개요

○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의견서 작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의견서 작성 경험이 많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 주민의견서는 2026년 OO시 예산안 중 10억원 이상 세부 사업 및 1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 등(319개 세부사업, 3조2633억원) 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나 관심사업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95개 세부사업 7,504억원**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음

□ 주민의견서 주요내용

○ **(환경)**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과하더라도 낭비라 할 수 없음.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폭발 등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람

□ 주민의견서 검토 결과(자치단체 검토 의견)

○ **(환경)**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4">ㅇㅇ동 둠벙정비 사업</td></tr>
<tr><td>제안방법</td><td colspan="4">주민제안 공모사업(정기공모)</td></tr>
<tr><td rowspan="3">사업개요</td><td>사 업 명</td><td colspan="3">OO동 둠벙 정비</td></tr>
<tr><td>사업위치</td><td colspan="3">OO로 1004</td></tr>
<tr><td>소요사업비</td><td>20,000천원</td><td>사업기간</td><td>2026. 3. ~ 12.</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4">○ 둠벙 및 도랑을 복원하여 가재 서식지를 보호하고 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과 학생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4">○ 천연으로 샘솟는 둠벙을 복원, 탐방객을 위한 정자 및 쉼터 조성
○ 경지조성으로 허물어진 둠벙 주변 제방 보완 및 조성(탐방객 이용)
○ 산출내역
- 도랑 진입로 조성 : 10,000천원
- 둠범 복원 : 10,000천원</td></tr>
<tr><td>사업효과</td><td colspan="4">○ 둠벙 및 도랑 복원으로 수질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멸종 위기생물 보존
○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학생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td></tr>
<tr><td>우선순위 선정방법</td><td colspan="4">○ 주민투표 5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50%</td></tr>
<tr><td rowspan="2">추진가능 여부</td><td colspan="2">추진가능</td><td colspan="2">추진불가능</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주민의견</td><td colspan="4">○ 방치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마을 물길의 상류 둠벙 복원을 통해 마을의 수환경을 보전하고, 진입로를 정비하여 진입여건을 확보하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 친수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체험장으로 활용 기대</td></tr>
</table>

나. 주민참여 범위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이나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 범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회계적 측면이나 예산이나 사업의 대상이란 측면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과정상의 참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임

□ 예산회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까지를 포괄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전체에 대해 주민참여 범위를 설정할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부적정 사업으로 제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매칭)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행정운영경비)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해당 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예산편성시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결산 및 사후적인 사업평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산편성 단계 외에 집행·결산·평가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되어 있음

○ 예산집행 참여는 사업집행에 공사감독 참여, 진척상황 모니터링 등, 결산 참여는 주민 등이 결산회의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의견제시를 통해 주민 의견을 결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도 사업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집행·결산 이외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집행·결산과정의 주민참여 관련 자치법규(예시)

>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등 결산 및 평가를 마친 사업의 보완 등 환류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함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예시)

① 주민제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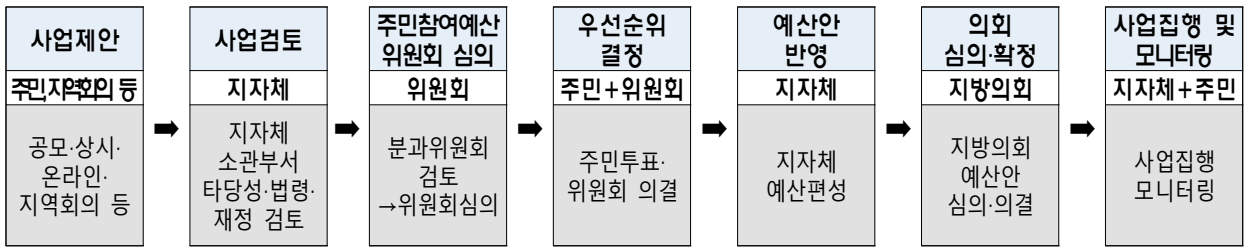

② 일반참여예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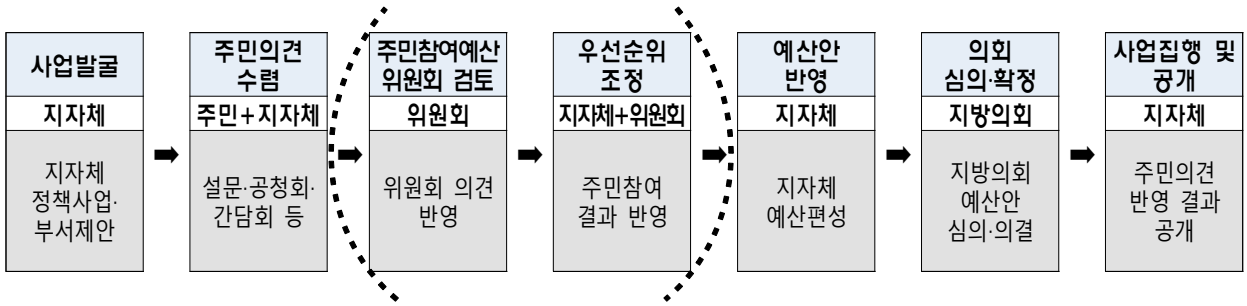

4.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분

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은 크게 제안 주체 및 참여방식에 따라 일반주민 또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기구에서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제안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사업에 주민이 의견 제시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참여하는 일반참여예산 사업으로 구분함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사업 구분		내 용	운용방식
1. 주민 제안 사업	1-① 공모 사업	▸ **주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업** ※ 주민 누구나 제안내역을 알 수 있음	▸ **주민 제안 후 주민 직접 투표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서 심의**
		▸ (사례1) ○○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 공모예산 총액 : 7억원 / 공모주제 : 생활안전·보행환경 개선 - 주민제안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2억원, 선정), 노후 골목질 LED보안등 설치(2억원, 선정), 하천변 야간산책로 조성(3억원, 선정), 마을 CCTV 추가설치(1억원, 탈락) - 선정절차 : ①공모 → ②주민공개 제안 →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④주민투표 반영후 최종확정 ▸ (사례2) ○○군 주민자유제안 사업 - 연중상시접수 / 예산한도없음 - 제안내용 : 농촌마을 쉼터 정비(예산반영), 노후 경로당 냉난방 교체(기추진사업, 제외) 마을 진입로 포장(타부서 사업과 통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농촌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쉼터 정비는 필요) → 지자체(의견채택)	
	1-②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회의 등에서 스스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읍·면·동별로 실링을 부여하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지역회의 등에서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사례) ○○시 △△동 자치계획형 사업(동별 배정액 1억원) - 주민자치회 결정사업 : 마을공유부엌 조성(4천만원), 어르신 보행안전 환경 개선(2천만원), 골목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4천만원) - 추진절차 : 주민총회 → 자치계획 수립 → 예산서 반영	
2. 일반참여예산 사업		▸ **자치단체가 일반 예산사업에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는 경우** ※ '26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통계에 포함할 일반참여예산사업 기준 마련 예정	▸ **사업부서 요구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절차*를 거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 절차는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사례) ○○○도 광역버스 노선 개편 사업 - 소관부서 : 교통과 / 총사업비 : 120억원 - 주민참여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노선 선호도), 주민설명회2회, 주민의견서 작성후 예산안 첨부	

나. 주민제안사업

>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임. 이 경우, 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판단, 컨설팅 등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게 됨.

□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제안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수정, 우선순위 결정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주민중심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이와 같이 주민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업은 주민 직접 투표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주민참여방법 관련 자치법규(예시)

>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제7조(주민참여 방법)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 3. 사업집행・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 4.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주민제안사업 참여 절차(예시)

① 주민 제안	② 사업부서 검토	③ 참여예산기구 심의	④ 예산편성·의회제출
▸사업계획 공모 ▸인터넷 팩스 우편 등 제안	▸사업 타당성, 적격·적법성	▸분과위 검토 ▸참여예산위 심의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반영 우선순위 확정 ▸예산안 편성·제출

자치단체 주민참여방법 개선안(예시)

주민제안사업의 질적 향상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제안방법이 주민에게 용이하며 사업제안서의 보완 및 충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정의 핵심현안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고, 사업제안이 용이한 주제를 사전에 기획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 예시 : (교통분야) 교통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와 동행하는 도시만들기

○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업 위주가 아닌 지역공동체 결속을 위한 사업 비중의 확대 등(○○도)

○ 제안단계 컨설팅 실시 : 주민제안사업 전문가 컨설팅 확대·운영(○○도, ○○시)

○ 제안사업의 적격성 검토를 강화 : 예산부서에 집중된 업무를 사업부서의 역할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우수 주민제안자에 대한 포상 확대 :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시 외 다수)

청년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참여형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형 사업을 발굴을 위한 한도액 신설 : ○○시, ○○도 외

○ 청년참여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도액 인상 : ○○시 등

○ 청소년참여 예산학교 운영 : ○○시(교육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

○ 기존방식으로 양적 목표 및 절차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선

1)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주민으로부터 사업을 공개적으로 제안받아 주민참여 절차를 걸쳐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제안사업을 의미함. 예산한도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방식으로 접수된 모든 주민제안사업을 포함.

○ 공모사업은 정기 공모뿐만 아니라 수시·상시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는 주민제안사업을 포괄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참여구조를 지향하고, 접수된 사업은 관계부서의 적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됨

2)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

>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나 지역회의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숙의 기반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며,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향식 구조로 운영됨. 또한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자치계획형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함

○ 사업 제안 및 숙의 과정의 주된 활동기구는 주민자치회(위원회), 지역회의, 이·통장협의회, 읍·면·동 예산협의체 등이며, 필요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을 통해 제안·숙의 과정을 보완할 수 있음

○ 사업 선정은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기존 주민참여예산기구가 사업의 최종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사업(적격성) 검토 강화

○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제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과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곤란한 주민참여 부적정사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사업부서에서는 ①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②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③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선행절차가 이행완료되었거나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⑥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⑦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⑧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라는 8개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사업부서가 주민의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적정사업을 선별하는 것은 매년 동일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의한 관행적 사업예산배분을 예방할 수 있고, 사업부서의 철저한 책임감을 강화하게 될 것임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과 부적정 사업(예시)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예시)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 연례적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사업비 증액요구 사업 ▸ 당해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예시 : 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 ▸ 자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지정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단순생활 민원성의 사업(단순 생활민원사업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별도 관리 추진)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3.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민참여의 가치를 공유 또는 제고 : 주민생활 밀착 또는 읍면동풀뿌리소규모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 또는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4.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소모성·행사성 사업지양 : 1회성 공연,축제,행사 등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예 : 총사업비 20억원 초과사업) ▸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예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업(예 : 동일구간 예산의 분리편성 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예시)
5.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선행절차 : 법 개정,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 재정계획 등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비나 사업(단,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 별도의 심의제도(개별위원회 등)가 있거나 의회 또는 각종위원회 심의시 폐기된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6.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제안하는 사업	▸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이나 사업 ▸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일부지역에 경비지출 효과가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다. 일반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사업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사업(사업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단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사전에 설정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통계상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에는 제외됨*
>
> * '26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통계에 포함할 일반참여예산사업 기준 마련 예정

○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사업부서 요구사업에 대해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거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게 됨

5. 주민참여 활동 지원

가. 주민참여예산 교육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온라인예산학교(사이버예산 아카데미), 찾아가는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워크숍 등에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및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검토 교육, 주민의견서 작성 교육, 우수사례 교육, 청소년 예산학교(교실),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교육 관련 지원조직(예시)

○ 경기도
- 주민참여예산제도연구회(민간위탁)가 교육, 주민제안사업 사후관리 컨설팅 등 지원

○ 대구광역시
- 시민재단(민간위탁)이 읍면동별 연 1~2회 파견, 지역회의 주재 및 사업 발굴 등 지원

□ 최근 많은 자치단체는 수요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율적 주민참여 환경조성을 위한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후자는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배부 및 향후 위원 선발 시 우대하고 있음

○ 일반시민, 청소년, 청년, 참여예산위원 및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 및 권역별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함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별 내용(예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비고(교육방법)
기본교육	일반시민, 예비참여예산위원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할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사회적약자, 청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사업제안서·주민의견서 작성, 제안사업 구체화 및 사례 학습 등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	비고(교육방법)
전문심화 교육 (역량강화)	예산·사업담당 공무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개요, 제외대상 사업, 대민홍보 등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사업대상, 제외대상 사업 등), 참여예산 사례별 학습(예산제안, 사업심의, 모니터링 등)	▸ 순회교육, 온라인 화상교육 등 ▸ 분과위별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설, 권역 방문교육)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등)	의제발굴 및 지역회의 운영 방법, 사업부서와 숙의 진행 방법	▸ 교육 및 회의 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청소년,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사례학습, 사업제안서 작성 등	▸ 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협업 추진

나. 숙의 활동 지원 및 정보공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구 회의시 전문가 지원(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등), 사업제안 관련 컨설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안사업 보완·지원을 할 수 있음

숙의·공론화(예시)

□ (사례 1)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시) :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숙의 활동 강화

○ 자치단체 담당자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 실시

○ 온라인 공론장(시민참여플랫폼 등 활용)을 통한 시민 찬반투표 또는 자유토론 진행

□ (사례 2) 전문 컨설팅단 운영 활성화(○○광역시) :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공모사업 제안자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하여 주민제안의 품질 제고

○ 제안사업 신청단계부터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공모 진입장벽 해소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적정 기준을 제안자에게 안내

○ 지역회의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을 통해 사업제안 내용을 구체화·수정·보완

□ (사례 3) 주민참여지원단 운영(○○시) : 읍면동 컨설팅을 통한 사업숙의 강화로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채택률(주민참여예산 반영) 제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별로 위원 2명씩 선발하여 지원단 구성

○ 읍·면·동별 의제 발굴을 위한 상담 및 주민제안사업 검토 컨설팅 실시 등

□ (사례 4)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심사 강화(○○시)

○ 사업부서의 제안사업 검토단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제안자와 참여예산 위원, 사업부서 공무원 간의 숙의활동을 통해 제안사업 구체화

○ 주민제안사업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지역주민회)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 실시

□ (사례 5) 재검토 기회 부여(○○시) : 제안사업 최종선정 전 지역회의와 사업부서 간 숙의 과정 부재로 인하여 폐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숙의기능 활성화

○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대체사업 또는 대안사업을 발굴하여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변경된 경우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 사업 등)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대체사업 또는 대안사업을 발굴한 경우

○ 타 공공기관 이행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전력공사, 통신사 등)이지만, 타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경우

□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여기구의 위원(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정보공개 방법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단톡방, 밴드 활용, 예산학교 교재, 주민총회 개최, 사업설명자료 제작·배포 등으로 위원과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워크숍 및 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음. 이밖에 공식 SNS 등 공개, 사업 설명자료 배포, 각종 회의, 언론 보도자료 제공, 공모사업 제안자 설명회 개최,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공개의 수준은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과 실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현황, 주민총회 운영, 공모 및 제안사업 심사·선정결과, 예산학교 교육내용, 집행(추진)현황과 반영내용, 의견수렴 결과, 회의록, 사업부서 검토의견 내역, 주민의견서, 조례, 매뉴얼 및 지침,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정보공개 강화(예시)

□ (사례 1) 주민제안사업 표지판 설치(○○시)

○ 추진목적 : 사업 현장에 주민참여예산사업임을 표시하여 제안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공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 사업기간 : 11~12월

○ 추진대상 및 운영방법 : 당해 연도에 추진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후 우수사업 15개소 선정하여 표지판 설차

□ (사례 2) 양방향 소통을 통한 환류과정 강화로 투명성 확보

○ 제안접수부터 부서검토까지 제안자의 제안내용 확인 및 소통확대 : 사업검토 및 심사, 채택단계까지 피드백을 통한 소통 과정 구축

○ 자치단체 홈페이지 제안사업 접수현황 및 심사 등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다. 홍보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전광판, 육교 현판, 포스터 등도 활용하고 있음

구분	홍보매체	추진 내용
온라인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활용
	SNS,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등
	보도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중앙·지방지)
오프라인	전광판	청사전광판 및 도로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BIT) 등
	광고	시정홍보 IPTV,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송출, 버스 등
	리플릿, 포스터, 배너	민원실 및 다중이용시설 비치, 행사시 배포 등
	각종소식지	시정소식지, 마을 소식지
	지방세 고지서	지방세고지서 뒷면 활용 홍보

홍보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 (사례 1)「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통합홍보 플랫폼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공모안내, 사업제안, 진행상황 조회 기능 통합 제공

○ SNS연계 카드뉴스·숏폼 영상 중심 홍보

○ 홍보 게시물의 '제안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홍보 콘텐츠와 제안 접수 연계

□ (사례 2)「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현장홍보단 운영」

○ 읍·면·동 단위로 '현장홍보단'을 구성, 주민자치회, 경로당, 아파트 단지등 직접 방문·홍보

○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와 함께 제안서 작성 지원 및 현장 접수 병행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종이신청서 작성 지원 및 대리접수 운영 등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개요

1.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개념

2.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화면 및 주요기능

1.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주민e참여」) 개념

□ 개요

○ (목적)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주민 접근성 제고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e호조+와의 연계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운영현황) ’23.9월 신규 오픈 이후, 243개 자치단체 중 231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주민e참여」)’ 개설·운영 중(’26.1.18. 기준)

* 12개 지자체는 별도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주민e참여’에 링크 연결 완료

구분	시도(5)	시(2)	군(1)	구(4)
12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시흥	연천	(서울)서대문,(인천)서구, (대전)중구,(대전)대덕

□ 주요기능

○ (대민서비스) △공모·신청·접수·결과 확인, △전자투표, △사업 진행현황 확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운영계획·실적, 홍보영상 등)

※ 휴대폰 본인인증 적용, 중복투표 방지 기술을 통해 주민 제안 및 투표의 신뢰성 확보

○ (자치단체 행정) ①「주민e참여」에서 사업 공고 및 선정결과 공표, ②e호조+에서 접수·심사·편성·집행·결산·통계 등 全 과정 전자적 관리

※ 제안사업 검토·심사 등 진행상황 투명한 공개, 예산편성·집행 등 내역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결산 결과의 공개 등 가능

< 주민e참여 시스템 운영화면 >

「주민e참여」 중앙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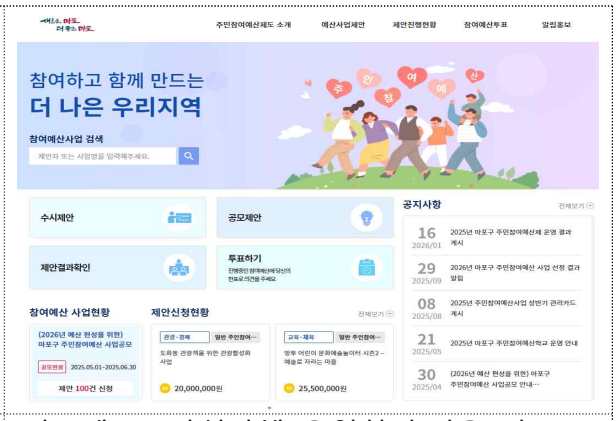

시스템 內 자치단체 운영화면(서울 마포구)

□ 향후계획

○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예산규모, 사업내역 등) 공개 확대, 지방정부별 운영현황 비교·분석 화면 등 「주민e참여」 고도화 추진(’26년~)

2.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주민e참여」) 화면 및 주요기능

< 「주민e참여」 구성도 >

< 대민서비스 화면 >

< 자치단체 업무 화면 >

< 주민참여예산 주요업무 흐름도 >

※ 담당자 배분을 위해 PM008(실국주민참여예산배분담당자) 권한 필요

< 주요업무기능 - ①공모사업 등록 >

☑ [e호조+] 재정계획→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기준관리→제안사업기준관리(14001)→일정(T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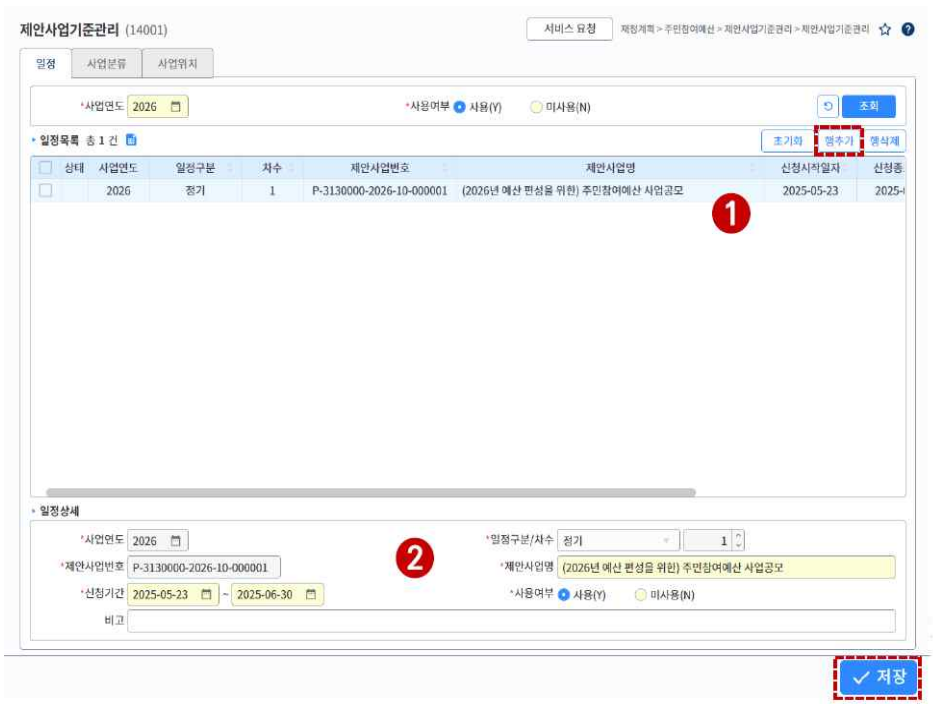

화면 개요

- 사업제안신청 또는 공모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준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화면

① 제안사업의 신청기간 및 제안사업명, 사용여부, 일정구분(정기, 수시) 등을 조회하거나 관리

② 신규 등록 시 : 조회 버튼 클릭 〉 행추가 버튼 클릭 〉 상세정보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 e호조+에서 등록한 기준정보를 포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시 최대 10분 소요

< 주요업무기능 - ②사업제안 관리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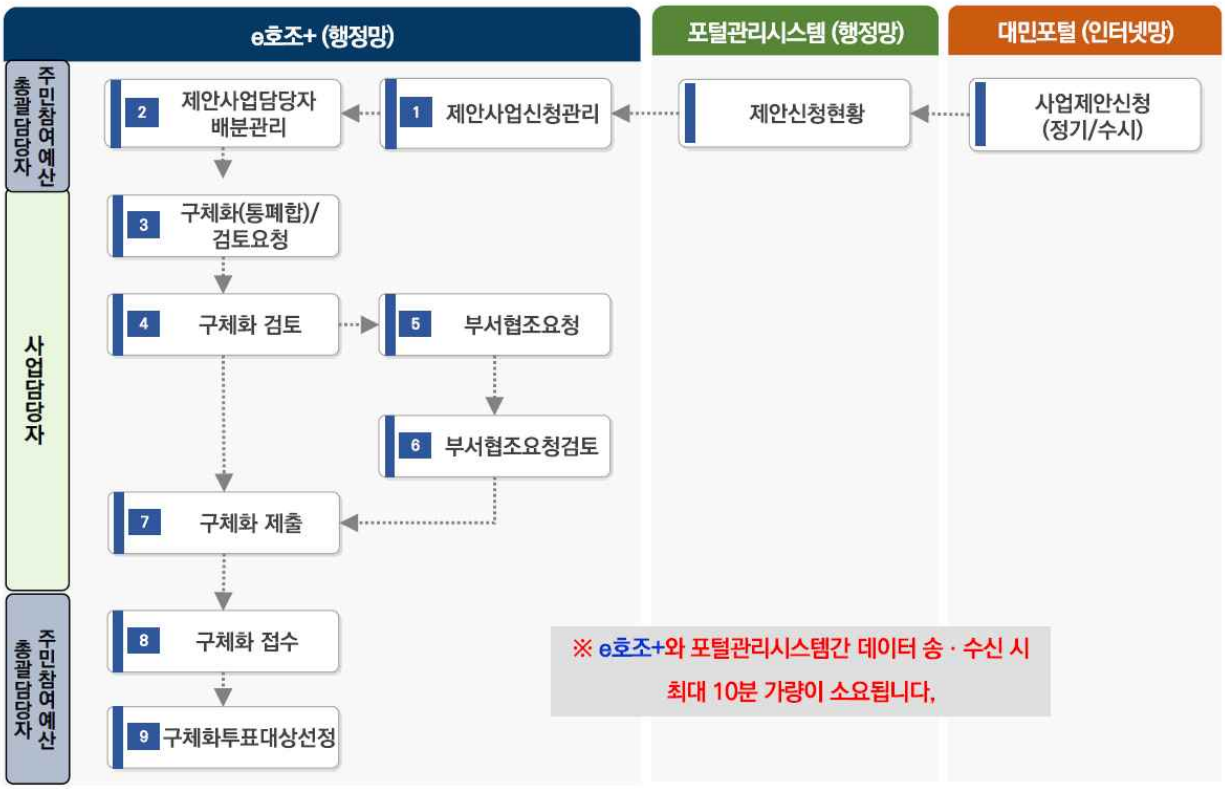

< 주요업무기능 - ③전자투표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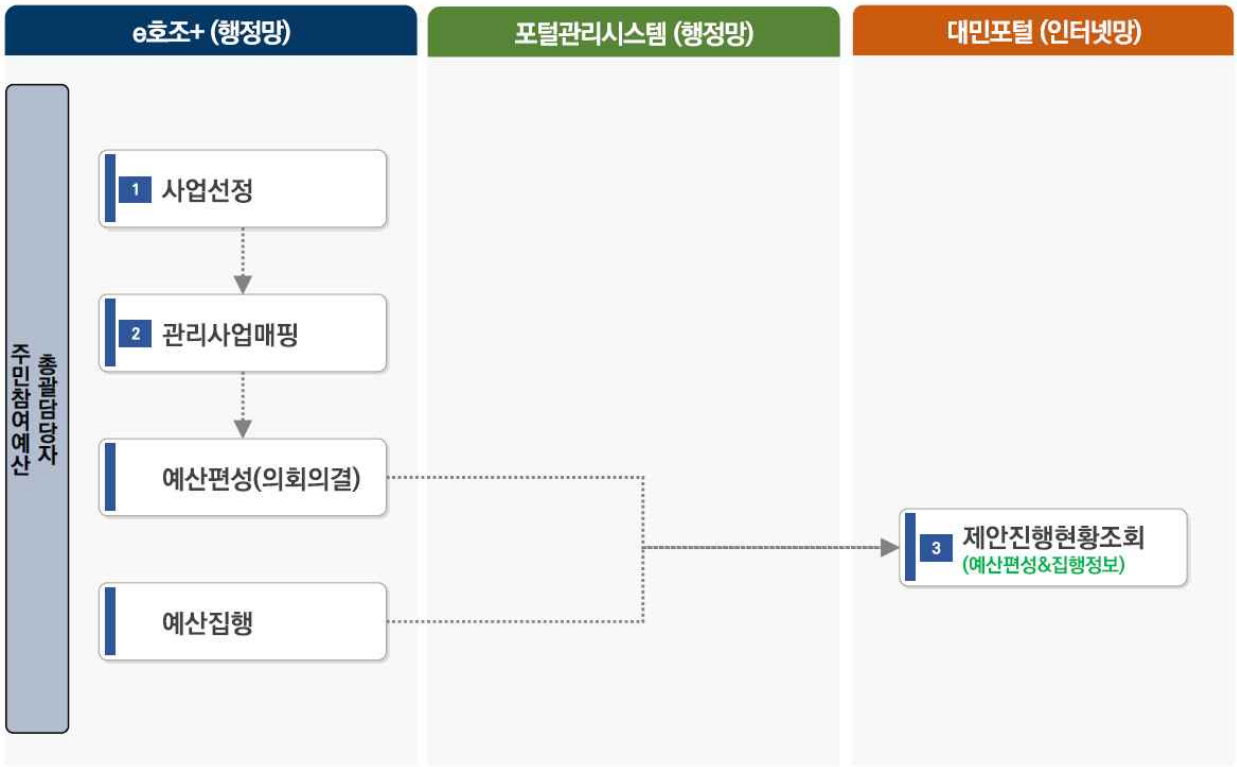
< 주요업무기능 - ④선정결과 등록 >